

CO-OP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6. 4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CO-OP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수요조사
2.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
3. 현장실습 학생 상담 및 지도
4. 현장실습 지도교수 운영
4. 현장실습 성과 평가 및 관리
5.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에는 센터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두고,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1. 현장실습 교육 기본계획 수립

2.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4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6조(기타사항)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